

문서번호	BSKS-1-1-2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6

2012.02.01.제정

2014.02.01.개정

2019.07.16.개정

2020.09.25.개정

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29조에 의한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복학 구분) 복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일반 복학 : 일반 휴학자의 복학
- 2. 군제대 복학 : 군입대 휴학하였던 자의 전역 후 복학기간 만료로 인한 복학
- 3. 조기 복학 :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성적을 포기하고 복학
- 4. 역복학 :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하는 복학
- **제3조(복학시기)**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종료 또는 휴학사유의 소멸과 동시에 복학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
 - ② 군복무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및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군제대 예정자가 복학할 시에는 소속부대장의 발행하는 교육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석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4조(복학의 제한) ① 휴학기간이 경과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.
 - ②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 [별지 서식]에 의거 산업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제5조(복학생의 등록) 휴학생이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6조(복학절차) ① 일반 및 군전역복학예정자는 등록기간내 등록을 필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9.07.16.>
 - 1. 학사종합서비스 로그인 (ID-> 학번, PW->주민등록번호 앞자리)<개정 2019.07.16.>
 - 2. 홈페이지 우측 My page의 '복학신청' 클릭
 - 3. 메뉴에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후 '수정' 클릭
 - 4. 복학신청 클릭
 - ※ 군제대자가 복학할 시에는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명서 사본을 교무처에 제출해야



문서번호	BSKS-1-1-2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6

한다. <개정 2020.09.25.>

- ② 조기복학 및 역복학생은 교무처에서 복학신청 및 학기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>
- ③ 조기복학은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를 포기하고 복학하는 것이므로 조기복학으로 중복되는 학기에 이수했던 학점은 모두 삭제된다.
- ④ 복학예정인 입학학과가 폐과된 경우 유사학과(계열)나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(계열)로 전과가 가능하다. 단, '유아교육과, 보건의료행정과'로는 전과가 불가능하다.
- ⑤ 복학 시 등록금을 기 납부한 상태라면 차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- ⑥ 복학예정자가 휴학 연장을 희망할 경우 복학예정학기의 휴학신청기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교수의 상담 및 확인을 받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⑦ 군전역 복학의 경우는 예비군중대에서 예비군 편성신청을 해야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⑧ 등록후 복학신청을 마친 자는 수강신청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6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6

[별지 제1호 서식] 복학원 양식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.>

결재일	담당	팀원	과장	처장

복 학 원

학 번		성 명		생년월일	년	월 일
학 과 (휴학당시)	열	과 / 계	학년, 반	()학년 ()반
학 과 (복 학 시)	열	과 / 계	학년, 반	()학년 ()반
복학구분 (휴학사유)	일반, 군전역,	신병	휴 학 기 간	년 년	월 일 월 일(_ (년)
연 락 처	휴대폰 번호(또는	· 전화번호)):()	_		
전역 연월일 (군전역자에 한함)	년 월	일	전산입력 일 자			

위의 본인은 금학기에 복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서류: 【전역증사본, 주민등록초본 1부(병적내용 기재), 병적확인서 1부】중 1종(해당자만 첨부)

년 월 일

본 인:

인

보호자 :

인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복 학 확 인 서

학 번		성 명		생년월일	년	월	일
학 과 (복 학 시)	과/계열		학년, 반	()학년 ()반	
복학구분	일반, 군전역	신병	휴 학 기 간	년 년	월 일 월 일(- 년)	

※ 복학원 제출자는 정해진 기간내(복학처리 후 3일간)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.

위의 학생은 학년도 제 학기 복학생임을 확인함.

년 월 일

교 무 처 장

<유의사항> 미등록휴학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.

학생증은 발급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개별신청하기 바람.

<참고사항> 군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자는 학기별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학점으로 인정 됨.



문서번호	BSKS-1-1-2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6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0.09.25.>

복 학 확 인 서

학 번	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-
학 과 (복 학 시)	자 과/계열 과/계열 야간	학년, 반	()학년 ()반
복학구분	일반, 군제대, 신병	휴 학 기 간	년 년	월 일 - 월 일(년)

※ 복학원 제출자는 정해진 기간내(복학처리 후 3일간)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.

위의 학생은 20 학년도 제 학기 복학생임을 확인함.

20 년 월 일

교 무 처 장

<유의사항>

- 1. 미등록 휴학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2. 선 복학신청, 후 등록의 경우 등록한 다음날부터 3일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- 3. 학생증은 발급 후 학과로 배부되므로 학과에서 수령하기 바랍니다.

<참고사항>

1. 군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자는 학기별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27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6

[별지 제 2호 서식]<표 신설 2019.07.16.>

《산업체위탁생만 작성》

복 학 동의서

학 번:

이 름:

사 유:

상기 자는 당사의 재직자로 귀 대학의 위탁생으로 추천·입학하여 과정이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하오니,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.

신 청 자:

(인)

산업체 대표:

직인